

# 정기(기동점검) 점검 결과보고

## [서남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기계설비공사]

- 점검일시 : 2020.01.30 (목)
- 점검결과
- ◆ 점검자 : 정진혁,이태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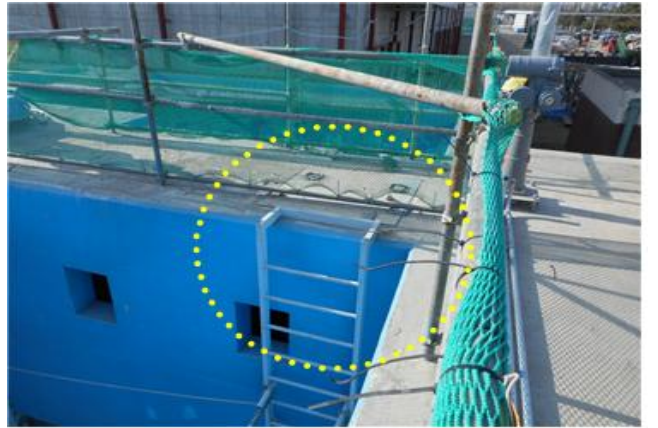
○ 추락재해 예방(설비부)

- 관급 폴리머 용해장치 통로상부 안전난간 조속히 고정 요망
-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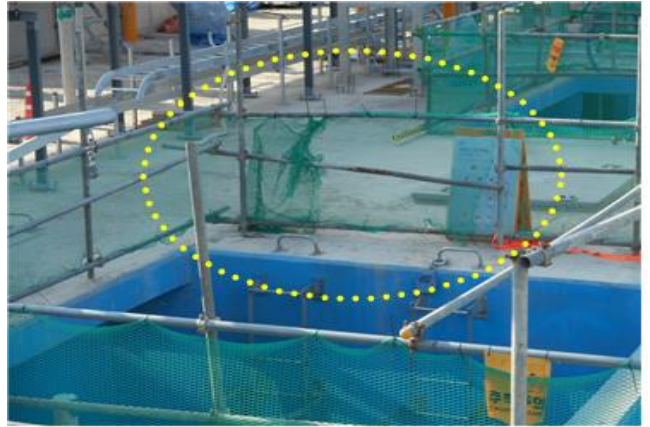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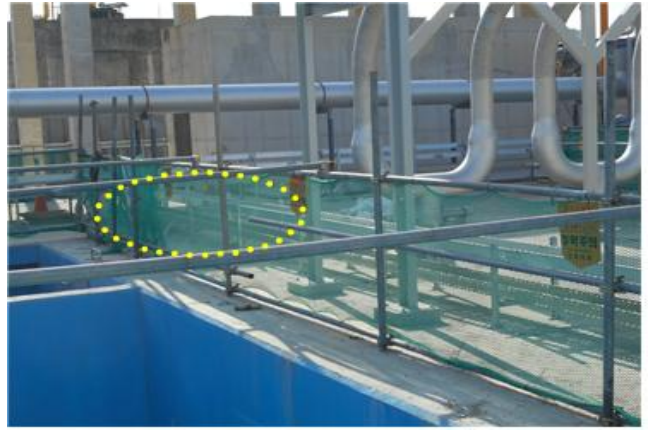
○ 추락재해 예방(설비부)

- 베올리아 공법사 수조하부로 내려가는 사다리는 여장 또는 지지대, 안전블럭 등이 없어 하강시에 추락위험이 매우 높으며, 사다리 위치에 안전한 출입구를 마련하지 않고 사다리까지 이동시에 안전대 부착설비도 없어 추락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므로 안전조치 후 작업 요망
-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제42조(추락의 방지),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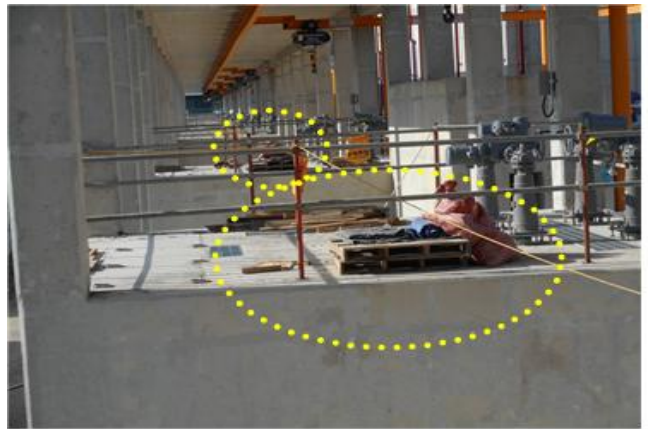
○ 추락재해 예방(설비부)

- 수조하부 공사를 진행하는 기계 시공자가 기존에 설치된 안전시설을 작업상의 문제로 해체하고 원상복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다른 공종의 작업자까지도 추락사고의 위험이 높아진 상태이므로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요망(NO.1)
-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제42조(추락의 방지)
- ※ 근로자보호 기본사항 10대 항목 (5. 안전시설 임의 철거 불가)



○ 낙하·비래 재해 예방(설비부)

- 유입수조 수문 거푸집 탈영 자재를 고소의 슬래브에 거치할 경우 낙하사고 예방을 위해 수직 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 되어 있으므로 조속히 설치 요망(NO.2)
-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 ※ 근로자보호 기본사항 10대 항목 (6. 낙하물 방지망 설치기준 준수)



○ 전도재해 예방(설비부)

- 전도사고 위험이 높은 우마의 단부와 다리를 밟고 안전모를 미착용한 상태로 슬러지 유출배관 용접작업 중으로 우마전도 시에 두부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작업자 철저히 교육 요망(NO.3)
- ※ 근로자보호 기본사항 10대 항목 (1. 작업원 안전모 착용)



